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2010 . 4. 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에 대하여, 『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』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의회 상정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

○ 풍수해 특성상 단위사업만으로 재해피해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.

○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, 재해발생시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.

○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, 관리뿐만 아니라,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나.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

○ 풍수해 특성, 피해발생원인, 재해위험도, 풍수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·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,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.

다.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추진 개요

○ 관련 규정

- 『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』 규정에 따라 태풍 · 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·장기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.

○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
- 사업위치 : 마포구 행정구역 전체(23.88㎢)
- 사 업 량 :
  - 기초 현황조사
  - 취약성 조사 및 위험도 분석
  -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
    - 하천 재해분야
    - 내수 침수 분야
    - 산사태, 급경사지 분야
    - 토사 유출 분야
    - 내풍 재해 분야
    - 시설물 재해 분야
  - 투자우선순위 결정
- 용역기간 : 2009. 2. 09 ~ 2010. 04. 30
- 용 역 사 : (주)청석엔지니어링
- 도 급 액 : 119,452천원

○ 그간추진사항

- 2009. 03. 00 : 계약
- 2009. 03. 00 : 착수
- 2009. 12. 16 :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

• 2010. 03. 31 :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
(개최결과: 별도의견 없음)

○ **향후계획**

•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청을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